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7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배현진·홍준표·지성호

윤두현 · 허은아 · 홍석준

김형동 • 최승재 • 권성동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을 회원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스포츠클럽을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생활체육 정책 안에서 진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하고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포츠클럽 진흥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스포츠클럽 진흥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9조).

법률 제 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	<u><</u> 삭 제>
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	<u><삭 제></u>
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	
<u>다.</u>	